



의안번호	제 2021 - 22호
보 고 연 월 일	2021. 10. 8. (제112차 정기회의)

의
결
안
건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의 건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1. 의결 주문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11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에 따라 각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별지와 같음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1. 살인범죄	1
가. 양형인자표	1
나. 양형인자의 정의	1
다.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3
2. 강도범죄	3
가. 양형인자표	4
나. 양형인자의 정의	7
다. 집행유예 기준	9
3. 횡령·배임범죄	9
가. 양형인자표	9
나. 양형인자의 정의	10
다. 집행유예 기준	12
4. 위증·증거인멸범죄	13
가. 양형인자표	13
나. 양형인자의 정의	15
다. 집행유예 기준	16
5. 무고범죄	17
가. 양형인자표	17
나. 양형인자의 정의	18
다. 집행유예 기준	19
6.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20
가. 양형인자표	20
나. 양형인자의 정의	24

다. 집행유예 기준	26
7. 사기범죄	27
가. 양형인자표	27
나. 양형인자의 정의	29
다. 집행유예 기준	30
8. 절도범죄	31
가. 양형인자표	32
나. 양형인자의 정의	34
다. 집행유예 기준	35
9. 공무집행방해범죄	36
가. 양형인자표	36
나. 양형인자의 정의	38
다. 집행유예 기준	39
10. 식품·보건범죄	40
가. 양형인자표	40
나. 양형인자의 정의	43
다. 집행유예 기준	44
11. 지식재산권범죄	46
가. 양형인자표	46
나. 양형인자의 정의	49
다. 집행유예 기준	50
12. 선거범죄	51
가. 양형인자표	51
나. 양형인자의 정의	53
다. 집행유예 기준	54
13. 방화범죄	55
가. 양형인자표	55

나. 양형인자의 정의	58
다. 집행유예 기준	60
14. 배임수증재범죄	61
가. 양형인자표	61
나. 양형인자의 정의	62
다. 집행유예 기준	64
15. 성매매범죄	65
가. 양형인자표	65
나. 양형인자의 정의	67
다. 집행유예 기준	68
16. 장물범죄	69
가. 양형인자표	70
나. 양형인자의 정의	71
다. 집행유예 기준	72
17. 권리행사방해범죄	73
가. 양형인자표	73
나. 양형인자의 정의	75
다. 집행유예 기준	76
18. 업무방해범죄	78
가. 양형인자표	78
나. 양형인자의 정의	80
다. 집행유예 기준	81
19. 근로기준법위반범죄	83
가. 양형인자표	83
나. 양형인자의 정의	85
다. 집행유예 기준	86
20.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범죄	87

가. 양형인자표	88
나. 양형인자의 정의	89
다. 집행유예 기준	90
21. 도주·범인은닉범죄	92
가. 양형인자표	92
나. 양형인자의 정의	93
다. 집행유예 기준	94
22.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범위반범죄	94
가. 양형인자표	94
나. 양형인자의 정의	96
다. 집행유예 기준	98
23. 대부업법·채권추심범위반범죄	100
가. 양형인자표	100
나. 양형인자의 정의	101
다. 집행유예 기준	102
24.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103
가. 양형인자표	103
나. 양형인자의 정의	104
다. 집행유예 기준	105
25. 디지털 성범죄	106
가. 양형인자표	106
나. 양형인자의 정의	111
다. 집행유예 기준	113

1. 살인범죄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과잉방위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피해자 유발(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살인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체손괴 ● 잔혹한 범행수법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4유형) ●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한 상해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피해자 유발(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체유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4유형의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09¹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살인미수범죄의 경우)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09¹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10¹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1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살인 범행 ● 잔혹한 범행수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지미수 ● 피해자 유발(강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한 상해 ● 피해 회복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잔존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위험한 물건 휴대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해자 유발(보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 강도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 금융기관 강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총기 사용(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협박 ● 생계형 범죄 ● 소극 가담 ● 흉기 단순 휴대(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 금융기관 강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중한 상해 ● 총기 사용(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협박 ● 생계형 범죄 ● 소극 가담 ● 흉기 단순 휴대(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4¹ 상습·누범강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금융기관 강도 ● 범행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강도) ● 중한 상해(누범강도) ● 총기 사용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특수강도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p>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 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01¹ 일반적 기준

마.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카.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03¹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01¹ 일반적 기준¹⁾

마.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1)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누범강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중한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계획적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횡령·배임범죄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 회사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횡령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09¹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추가 부분]

09¹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10¹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1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반복적 범행 ● 비난 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피고인이 고령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구분		부정적	긍정적
		<p>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4. 위증·증거인멸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위증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발적 범행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자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타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 ● 소극 가담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증거인멸·증인은닉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양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형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01¹ 위증¹⁾

차.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위증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우발적 범행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위증을 교사한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1) 증거인멸·증인은닉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5. 무고범죄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	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 ● 자수·자백 	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08¹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무고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무고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08¹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09¹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0¹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중한 피해결과 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구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피고인이 고령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6.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 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경미한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3유형 중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의 경우는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2, 3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서 행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피해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취득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4¹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2유형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의 경우는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 태인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 공동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자.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자.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매매·이송인 경우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경미한 상해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구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발적 범행 ●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호송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7. 사기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일반사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인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 · 배임범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조직적 사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단순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아.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추가 부분]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참작 사유	<p>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미합의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p>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8. 절도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기를 휴대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 자			범한 경우(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생계형 범죄 ● 피해 경미 ● 소극 가담	● 흥기를 휴대한 경우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행위자/기타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p>카. 처벌불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반복적 범행 ● 흥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피해 회복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경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구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수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9. 공무집행방해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공무집행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공용물무효·파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야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p>해 회복(공탁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p>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특수공무방해치사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피해-임은 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범죄가 계획적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구호 후송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차.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

구분	부정적	긍정적
요 참 작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 반 참 작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10. 식품·보건범죄

가. 양형인자표

02¹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 별 양 행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형인자		<p>되지 못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p>를 입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할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 식품 판매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 운반·보존·진열 행위만 한 경우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상해가 발생한 경우(상해가 중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 의약품인 경우(1, 4, 5유형) ●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피해자측의 치벌불원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03¹ 부정의료 행위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측의 처벌불원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03¹ 부정의료행위

마. 환자측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상대방인 환자나 그 가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02¹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¹⁾

바.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2¹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10년 이내) ●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1) 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3¹ 부정의료 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10년 이내) ● 2, 3유형인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2, 3유형)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1. 지식재산권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등록권리침해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규모가 큰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상당 금액 공탁 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저작권침해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상당 금액 공탁 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영업비밀침해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4¹ 부정경쟁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를 초래한 경우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구분	부정적	긍정적
요 참 작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영업비밀침해행위) ●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영업비밀침해행위) ● 피해 미변제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 반 참 작 사 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피해규모가 큰 경우 ●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생계형 범죄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2. 선거범죄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과성이 낮은 경우 ●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 사실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과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진 사퇴, 불출마 ● 선거 후 처벌불원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누범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03¹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사.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공표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보도의 정정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처벌불원이나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이나 선거 이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추가 부분]

03¹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사.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아.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도를 정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3¹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 자수 ●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용하여 범행한 경우	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형사처벌 진력 없음 ● 선거 후 처벌불원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3. 방화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인자			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3유형은 제외)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1유형)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 미필적 살인의 고의(3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01¹ 일반적 기준

다.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03¹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01¹ 일반적 기준¹⁾

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중한 상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경미한 상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1)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4. 배임수증재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배임수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저히 손상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배임증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증재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01¹ 배임수재

나.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추가 부분]

01¹ 배임수재¹⁾

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배임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 적극적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 성실한 근무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 배임중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하는 경우는 제외)	

02¹ 배임증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증재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5. 성매매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형인자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대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중대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 농아자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요구 · 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 동기 ●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

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추가 부분]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	-----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반복적 범행(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른 경우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 19세 미만 대상 범죄는 제외)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 처벌불원(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 등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16. 장물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일반장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 제외)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참작 사유	<p>거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복적 범행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 피해 회복 없음 	<p>유가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본범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고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7. 권리행사방해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강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강요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3유형 제외)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권리행사방해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01¹ 강요¹⁾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강요

1) 권리행사방해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¹ 권리행사방해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구분	부정적	긍정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8. 업무방해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업무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저지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경매·입찰방해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 농아자	● 동종 누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01¹ 업무방해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01¹ 업무방해¹⁾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업무방해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1) 경매·입찰방해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¹ 경매·입찰방해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9. 근로기준법위반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임금 등 미지급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인 미지급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차.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미지금액의 약 2/3 이상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추가 부분]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

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중간착취)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계획적인 범행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구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상당금액 공탁 또는 피해 회복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¹ 임금 등 미지급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20.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과실치사상 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산업안전보건 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자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다.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추가 부분]

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과실치사상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보험 가입 ● 상당 금액 공탁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2¹ 산업안전보건 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구분	부정적	긍정적
	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1. 도주·범인은닉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도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 동종 누범
일반양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 자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2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2유형)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01¹ 도주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도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현저한 개선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2유형)

22.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범위반범죄

가. 양형인자표

02¹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행위 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부정수표 발행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부도)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범행 후 도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01¹ 통화 위조·변조 등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02¹ 부정수표 발행 등

다.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확인이 가능한 공소 제기되기 이전의 수표 금액과 회수된 수표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 부분 회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수표소지인 등을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확실한 지급 계획 등에 의하여 향후 확실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추가 부분]

01¹ 통화 위조·변조 등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¹⁾

다.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

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2¹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1) 부정수표 발행 등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일부 피해 회복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3¹ 부정수표 발행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허위 신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참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도피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는 경우(수표 부도) ● 소극 가담 ● 일부 피해 회복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3. 대부업법 · 채권추심법위반범죄

가. 양형인자표

02¹ 채권추심법위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또는 실질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대부업법위반죄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행위 자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02¹ 채권추심범위반

바.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

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2¹ 채권추심범위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참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구분	부정적	긍정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4. 유사수신행위범위반범죄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부 피해회복 ● 일반적 수사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라.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총 피해액(총 수신액에서 투자자에 대한 환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약 2/3 이상의 금액에 관해 투자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거나 투자자의 피해가 회복 또는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추가 부분]

라.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가담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구분	부정적	긍정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회복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5. 디지털 성범죄

가. 양형인자표

01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범죄 포함)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¹ 카메라등이용촬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¹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 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4¹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05¹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형인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01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자. 처벌 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

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02¹ 카메라등이용촬영

나. 처벌 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추가 부분]

01¹ 아동·청소년성착취물¹⁾

자.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차.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¹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1)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 (2유형)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

02¹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또는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일반 참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

구분	부정적	긍정적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 (3유형)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유에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적 수사 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3¹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04¹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